27.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**시 사 보 고 서**

1. 심사경과

O 제출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O 제 출 자 : 대구광역시교육감

O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8일

O 상정일자 :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

제1차 교육위원회(2020년 11월 23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조태환)

- □ 제안이유
 - O 상위법령인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명시
 - O 법제처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□ 주요내용

- 본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명 변경(「대구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」)
- O 상위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위임 규정 정비(안 제1조)

- 공인보관자에 '전자이미지 공인'의 보관자에 대한 내용 신설 (안제11조제9호)
- O 법제처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 순화

3. 검토보고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노인만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'전자이미지공인'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관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음

O 주요 내용으로는

- ▶ **안 제1조에서**,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음
- ▶ 안 제11조제9호에서, 공인관수자에 '전자이미지공인'의 보관자에 대한 내용 신설

O 검토 결과

- ▶ 본 개정 조례안은, 기존 「대구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」를 「대구 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」로 제명을 변경함으로써 조례의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,
- ▶ 조례의 근거법령인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시하였으며
- ▶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

개정에 이견이 없음

▶특히, '전자이미지공인'의 관수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'전자이미지공인'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O 없 음

5. 토론요지

O 없 음

6. 수정안요지

O 없 음

7. 심사결과

O 원안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요지

O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없 음